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12. 13.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: 2017년 11월 13일
- 나. 발 의 자 : 김재진 의원 외 4명
- 다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17일
- 라. 상정일자 :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
제1차 운영위원회(2017.12.4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재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예산·회계·결산·자금관리·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「지방재정법」에서 결산·수입·지출·현금 등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「지방회계법」으로 이관·시행(2016.11.30.) 됨에 따라 이들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인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정확히 규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정확히 규정함 (안 제2조)
 - 3명 이상 5명 이하 → 3명
-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「지방재정법」에서 「지방회계법」으로 분법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(안 제5조제1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목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·회계·결산·자금관리·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「지방재정법」에서 결산·수입·지출·현금 등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「지방회계법」으로 이관·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- 주요내용으로, 안 제2조에서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‘3명 이상 5명 이하’에서 ‘3명’으로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「지방재정법」에서 「지방회계법」으로 분리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- 검토결과,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는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되며, 자구에 별다른 이상은 없음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재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1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17년 11월 일

발 의 자: 김재진 의원 외 4명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예산·회계·결산·자금관리·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「지방재정법」에서 결산·수입·지출·현금 등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「지방회계법」으로 이관·시행(2016.11.30.)됨에 따라 이들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정확히 규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정확히 규정함 (안 제2조)

- 3명 이상 5명 이하 → 3명

나.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「지방재정법」에서 「지방회계법」으로 분법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5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, 「지방회계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“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”를 “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51조 및 제53조”를 “「지방회계법」 제15조 및 제16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검사위원의 정수) 검사위원의 정수는 <u>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.</u></p>	<p>제2조(검사위원의 정수) ----- ----- 3명으로 한다.</p>
<p>제5조(검사위원의 직무) ① 검사위원은 「지방재정법」 제51조 및 제53조에 따라 구청장이 작성하는 세입·세출 결산 및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수행한다.</p>	<p>제5조(검사위원의 직무) ① ----- --- 「지방회계법」 제15조 및 제16조에 ----- ----- -----</p>
<p>② ~ ④ (생 략)</p>	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